[후속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간	2022년 9월 14일(수) 15:30
• 제목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개최 일시·장소	**2022년 9월 14일(수)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문의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10-4244-8564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2701-9982 명숙(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 분량	총 19쪽.

= 자료 순서 =

1. 자료집 목차 …… 1p.
2. 기자회견 순서 …… 2p.
3. 기자회견 취지 …… 3p.
4. 운동본부 참가단위 …… 5p.
5. 운동본부 사업계획 …… 7p.
6.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 9p.
7. 기자회견 발언 …… 11p.
8. 기자회견 사진 …… 20p.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운동본부 취지 발언

양경수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2. 사업계획 발표

박래군 대표 (손잡고/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3. 현장 발언

김득중 지부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박수동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진경호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김세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5. 발족선언문 낭독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효정 기획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6. 상징의식

배춘환 전 손잡고 대표 및 기자회견 참여자

[기자회견 취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료의 현실화를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지난 7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 원청 사용자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들 두 사업장 노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이에 전국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022. 9. 13. 현재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9월 14일(수)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주요 순서로는 △운동본부의 사업계획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선언문 낭독 등 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요구를 대형 노란봉투에서 꺼내어 펼쳐 보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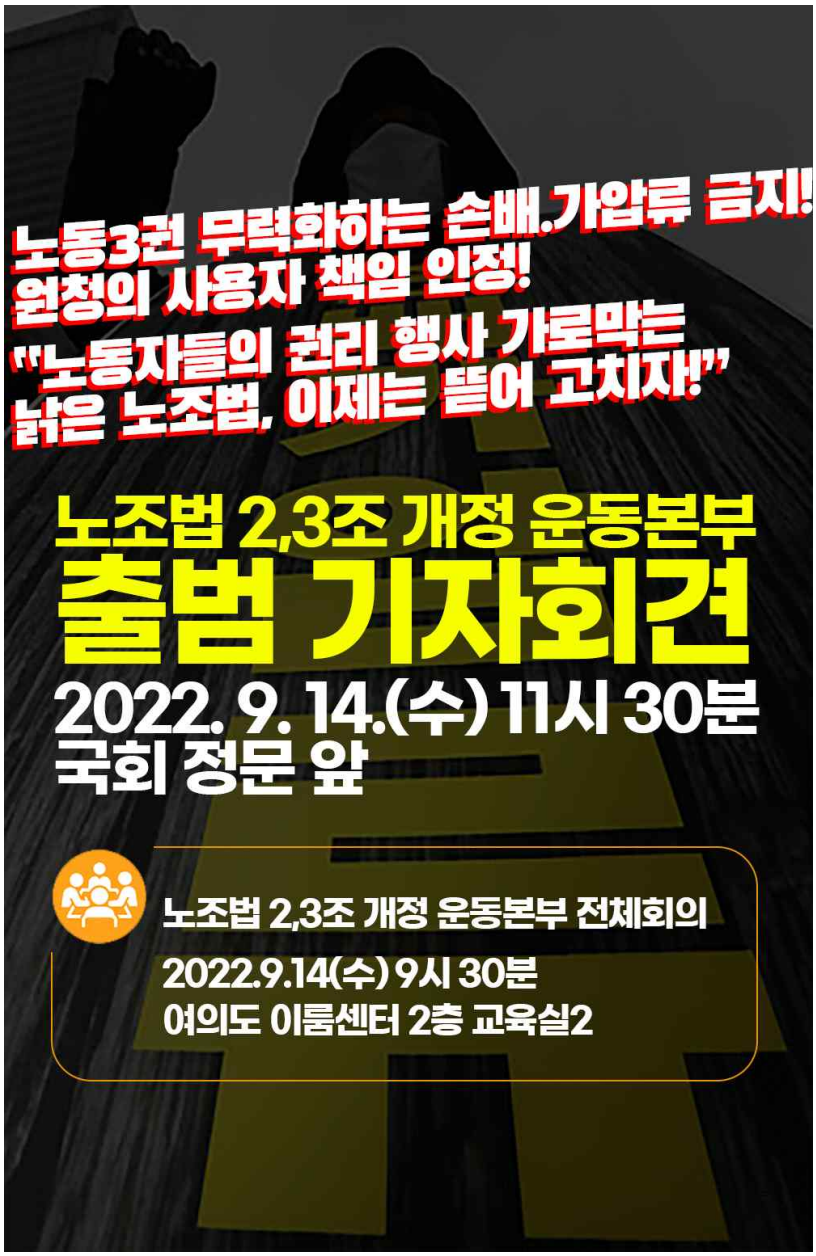

[운동본부 참가단위]

(노동계)

(사)노동실업광주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자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동희망발전소, 대학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학생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거통고조선하청지회, 쌍용차지부, 유성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시민사회)

(사)양심수후원회, 13일의 지킴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남진보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월혁명회, 서울민중행동,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통일광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

다산인권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법률단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학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2022. 9. 14. 현재 93개의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4개의 정당 참여**

*** 발족 이후 참여 단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

[운동본부 사업계획]

▲ 사업 기조와 방향

1) 활동 기조

-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으로 인해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집중 조명되었음. 특히 마지막 쟁점이었던 손배청구 문제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호출되었음.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단체행동은 불법파업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노조법 제2조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음(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2. 7. 22.~23.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에 대하여 찬성이 52.8%로 반대 20.4%보다 무려 32.4%p 높게 나온 바 있음).

-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대응T/F, 그리고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국회 환노위에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반면, 경영계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벌써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헌법상 노동3권을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꾸어 기본권의 실질화 및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 나감. 재벌과 기업주(경영계) 중심의 국가정책 방향을 개선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담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감.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입법의 결실을 맺고, 향후 노동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후퇴에 맞서는 시민전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및 당사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가야 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서 진행되는 입법투쟁이 되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

2) 주요 사업

(1) 시민참여 대중 캠페인

- 빠띠 캠페인,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2) 국회 대응 등

-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 사용자 책임 불인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린다.
-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3) 손배 가압류와 원청 책임의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와 토론회 등

-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알리는 증언대회를 배치한다.
-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여러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4) 대중 행동

-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대중행동을 만든다.
- 입법 논의 시기 국회 앞에 단호한 대오를 형성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한다.

[출범 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1. 운동본부 취지 발언

- 양경수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1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노동자의 정의, 사용자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법의 맨 앞자리에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진짜 사장이 대화에 나오라고 하청 노동자들이 무수히 요구해도 그들의 답은 '우리는 관계없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임을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 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임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투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손해배상을 금지하고자 요구합니다.

오늘 90개가 넘는 수많은 시민사회·종교계·진보정당·학계·법조인들이 함께 모여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반드시 연내에 개정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합니다.

힘찬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함께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 남재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소속돼 있는 남재형 목사입니다.

지난 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을 감금하면서 51일간 투쟁을 하고, 그때 '큰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자기를 양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접고 포기하고 양보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마치고 나서 4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손배소 소송을 회사에서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쌍용자동차 이후에 느낀 것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이라는 점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하고, 그런 연후에 이 손배소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또 노동자를 억압하고 수렁으로 밀어 넣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노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지지도 않는 원청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걸 손배소라고 하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법들은 지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종교인들,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노조법 개정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국회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사업계획 발표

- 박래군 대표 (손잡고/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손잡고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박래군입니다.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7페이지~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후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 7개가 환노위에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노조법 2조·3조가 노동권이라고 하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본권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ILO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생각입니다.

방금 기조에서 설명드렸듯, 저희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또한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캠페인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시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띠 캠페인',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 사용자 책임 불인정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알리는 증언대회도 배치하겠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대중행동을 만들어서 입법 논의 시기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단호한 대오를 형성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3. 현장 발언

- 김득중 지부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오늘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를 한 날입니다. 9년 만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13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는 손해배상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조법 개정이 조속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2009년도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00명을 포함한 3천 명의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배경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상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3권을 부정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 연대했던 동지들 수백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13년째 손해배상 이 재판으로 1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4만 7천원'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던 8년 전, 1심에서 원금과 이자 47억의 손해배상 금액이 그동안 20%가 넘는 법정 지연이자가 덧붙여져 현재 124억이 됐습니다.
물론 쌍용차가 금속노조와 당사자들에게 청구했던 손배 문제는 아직 매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2018년도 그렇게 폭력 진압을 했던 경찰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09년도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너무 과도했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과했죠.

그 이후로 국가인권위도, 이곳 국회 본회의에서도 손배 철회 결정문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13년 동안 저희들은 여전히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13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뒤에 많은 분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 13년째 끊이지 않는 국가 폭력에 맞서서 함께 투쟁해 왔던 쌍용차 67명의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다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1차 24명의 진단서와 2명의 사망 진단서를 8월 30일 대법원과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또 추가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13년이라는 이 장기간의 국가 폭력에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고 있다는 것, 그동안 지부장으로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사과했던 경찰청, 그 진실을 받아들여서 쌍용차에 청구됐던 이 손배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앞서 공동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쌍용차지부도 당사자들과 함께 법 개정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대우조선은 구사대를 동원해서 저희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폭력적 진압을 피해 도망간 자리가 바로 도크 안이었고, 대우조선은 470억으로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절박함에 답했습니다.

흔히들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470억의 손배가압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합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발 딛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삶을 묵과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함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겨진 인간다움을 반드시 꽃 피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서 투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농성을 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아니 이 사회 뜻 있고 생각 있고 그리고 인간다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켜갈 의미가 있는 사회를 위해서 다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법 2조·3조 개정해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차별받지 않

으면서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동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고공농성이 있었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 박수동이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지부 투쟁이 파업 돌입 121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업에 돌입할 당시에는 이 투쟁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15년간 제자리인 운송료 인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보다 2배, 3배를 지불하며 대체 운송을 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화물노동자들의 대체운송 저지 투쟁은 '불법 폭력 행위'라고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만든 하이트진로지부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온갖 불법 딱지를 붙여 자행된 해고와 손배가압류였습니다.
파업 돌입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와 손배 청구가 진행되었고, 화물노동자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수십억 원의 손배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화물차가 가압류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고, 화물 노동자는 파업 기간 중 모든 소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보전 받을 길이 없고 온전히 화물노동자가 감당해야 하고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야 했습니다.
파업 기간 내내 집을 떠나 있는 와중에도 집으로 송달된 손배가압류 청구는 화물노동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운송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화주사인 하이트진로는 운송사와 화물노동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에는 하이트진로가 직접 나섰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하이트진로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이용하고 남발했습니다.
비단 하이트진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닐 것입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노동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고, 화물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2조·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트진로지부도 노란봉투법 제정과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되는 그 날까지 앞장서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진경호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작년 6월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 작년 6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주는 원청 택배사이다, 이런 역사적인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며칠 뒤에 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정부 4개 부처, 그리고 택배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7천억 원은 박스 당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해서 충당하기로 국민들이 용인해 주셨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이 우리 사용자이고 교섭 책임을 지고 있다는 판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원청사와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동의해서 올렸던 택배 요금은 CJ대한통운이 5천 억의 추가 이윤을 발생시켰고 이 중 3천 500억을 자신의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교섭하자, 교섭이 힘들면 대화라도 하자, 대화가 안 되면 얼굴이라도 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전면 파업을 두 달 넘게 진행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떨어진 건 20억의 손해 배상, 수없이 많은 형사 고소고발이었습니다.
지금 대한통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억 그거 아니다. 원래 100억이 넘는다. 니네들 하는 거 봐서 일단 20억만 넣고 추가로 너네들 밉보이면 100억 손해 난 거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들의 손해배상이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간부들의 삶을, 조합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들을 저들는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법관의 판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년 동안의 탐욕의 질주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노조법 개정 2조·3조 개정에 온 역량을 다해서 우리 운동본부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 김세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노조법 2조, 3조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건과 노동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판단의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의 외형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찾는 것이 노동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해석 기준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방향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산업구조와 노사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권리와 책임을 노조법이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외형을 걷어내고, 그 실질에 부합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3자를 매개시키는 간접고용과, 근로계약이 아닌 형식의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활용하는 특수고용 형태들이 확산되면서,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생겨났고, 근로조건 등을 실제 좌우하는 자를 상대로 노동법적 책임을 묻거나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현재의 노조법 2조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상으로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들 즉,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차례 대법원이 확인 한 바와 같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그 제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에 그 개념 정의 역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간접고용에서 하청 사용자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하청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항상 원청 사용자에게 미룹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원청 사용자이므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교섭에 있어 원청 사용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일반화된 현재의 산업구조라면, 노동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조의 조문 상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조법 3조입니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의 투쟁은 손배가압류가 사실상 파업을 끝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얼핏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문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보호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노조법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 노조법 3조의 민사면책 자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쟁의행위 목적이 정리해고 반대 등 경영권의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 해고자 복직 등'권리분쟁에 관한 것인 경우, 타임오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모두 그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만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이쯤되면, 노조법에 의한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강력한 손배책임을 물어야 불법파업이 근절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파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꿰뚫지 못하는 현행의 법체계가 불법파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생생한 반증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저임금·장시간·위험 노동에 내몰린 건 법이 그들에게 합법적 협상의 무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파트너인 하청업체는 결정권이 없는데 노동조합은 원청과의 교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을 거론하는 순간 그 파업은 불법이 되고, 평생을 갚아도 갚지못할 엄청난 손배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권에 대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법원은 노동3권에 대하여,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 권리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노조법상 면책의 범위를 “이 법에 의한”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한정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파업은 그 법률적 성격으로만 보면 소극적으로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노동자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부작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따라 노조할 권리 일반에 대한 민사면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